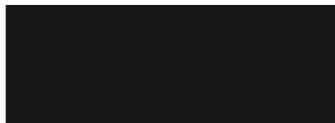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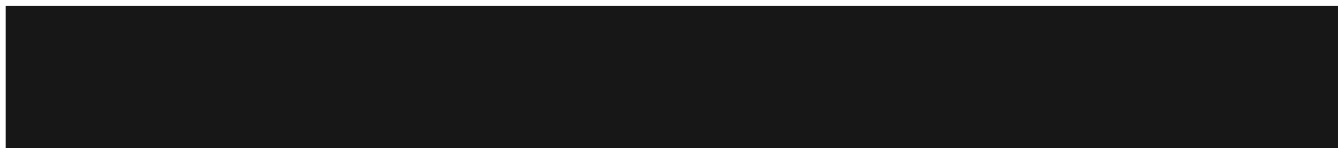
## 약 식 명 령

사 건



특수협박

피 고 인



주 형 과  
부수처분

피고인을 벌금 1,000,000(일백만)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,000(일십만)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